

서울중앙지방법원

제 17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08가합34007 채무부존재확인
원 고 ○○해상보험 주식회사
서울 중구 ○○
대표이사 이○○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, 허현희, 김혜영, 김선영
피 고 김○○
제주시 ○○
변 론 종 결 무변론
판 결 선 고 2008. 7. 18.

주 문

1. 피고가 2008. 3. 3. 한국병원에서 급성골반복막염 및 골반복막유착 진단 하에 시술 받은 골반내용물유착박리술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가. 피고는 2007. 12. 14. 원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, 난소낭종 등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.

나.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위반과 기망행위를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한다. 따라서 피고가 2008. 3. 3. 한국병원에서 급성골반복막염 및 골반복막유착 진단 하에 시술받은 골반내용물유착박리술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.

2. 무변론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

재판장 판사 김영혜 _____

 판사 이선미 _____

 판사 김정현 _____